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및 제공급여

구분	내용	비고
제공급여의 종류	시설급여	※ 본 기관은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입소대상	장기요양등급 1~4등급 시설급여	
입소정원	61명	
모집방법	홈페이지, 소식지, 현수막게시 등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입소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계약해지	1)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한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3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10일 이상 장기입원 및 외박을 하였을 때
특별보호	감염으로 인한 격리나 건강상태의 집중 관찰이 필요한 경우 특별침실에서 보호 한다
배상책임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시설물에 대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입소자 및 보호자가 고의로 시설물 및 비품, 타 어르신의 개인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반입제한물품 : 칼, 가위 등 날카로운 물품 및 화재위험 전기용품)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 이상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입소계약보호자) 2) 신원인수인은 어르신이 서비스이용계획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3) 어르신에 관한 병력 및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4) 입소자의 입소비용부담의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변경 시 즉시 요양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① (의료권 우선원칙) 입소 생활도중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거나 질병이 발현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요양원은 지체없이 병원으로 이송하여 건강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보호자(신원 인수인 또는 계약체결 당사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진료권 우선원칙)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며, 의료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이송하여 병원진료를 받도록 하며, 이 사실을 보호자(신원 인수인 또는 계약체결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용료	이용료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식재료비)으로 하며, 변경 시 신원 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에 변경하도록 한다.

3. 급여 및 비급여 항목

1) 급여 (2026년 등급별 요양급여 수가)

급여종류	등급	요양수가	본인부담(31일 기준)			
노인요양시설	61명	1일당	일반(20%)	경감(12%)	경감(8%)	기초생활수급자
시설급여	1등급	93,070	577,030	346,220	230,810	본인부담 없음
	2등급	86,340	535,300	321,180	214,120	
	3~5등급	81,540	505,540	303,320	202,210	

2) 비급여

구분		기초생활		일반/경감	기타 자부담 발생 가능 항목	비고
		생계	의료			
식재료비	3식/일	본인부담 없음	3,000원×3회=9,000원	· 병원진료/ 입원 및 투약 · 별도의 경관 영양 유동식 · 지급품목 외 개인전용 특수복지용구 · 개인전용 건강보조식품		본 기관은 공시품목 외 일체 비용을 청구 또는 수납하지 않습니다.
간식비	2회/일	본인부담 없음	500원×2회=1,000원			
합계		본인부담 없음	월 310,000원			